

# 외국환거래 약정서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거래]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앞

본인: \_\_\_\_\_ (인)

본인은 중국건설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수출, 수입, 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장 공통사항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 수출거래
  -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의 매입 및 추심
  -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무화환어음(Clean Bill)의 매입
  - 기타 전 각 호의 준하는 거래
- 수입거래
  - 신용장 발행
  -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 내국신용장발행거래
-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거래

### 제2조 권리의 행사

- 수출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의 경우에는 은행은 환매채권에 의하여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담보

본인은 제1조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행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제4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 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

행이 정한 해당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1. 본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 (지급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3. 제1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은행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청구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제6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규약, 『무역업무자동화 처리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 제8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선정

신용장 또는 계약서, 매입신청서 등에 명시되지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은행 및 화환어음의 송달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 제9조 결제기간의 연장

지급의무자가 결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승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승낙한 사실을 곧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10조 매입대금상환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①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②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2.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 전자우편,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①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 ②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며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3.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화환어음의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로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로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
5.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 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제11조 화환어음 등의 반환

1.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화환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화환어음을 수령함으로써 되돌려 받은 것으로 합니다.
3.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

#### 제12조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

1. 은행은 본인이 제출하는 신용장발행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 통지합니다.
2. 신용장발행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은행(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기타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통지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 제13조 대도물품의 처분

1.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 제14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하는 화환어음

1.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하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사후통지 하기로 합니다.
2. 화환어음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등의 동의여부에 대한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습니다.
3. 은행이 본인에게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의 회보가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화환어음이 지급 또는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결제일

본인은 대금의 결제 조건이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화환어음 (차기 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 통지서)도착 후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일 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 출급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일 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원화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16조 수입물품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1. 본인은 화환어음 도착 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락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본인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을 적립하기로 합니다.

#### 제17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1. 은행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 (발행은행,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경우는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2. 본문에 불구하고 유효기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18조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

본인이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을 은행에 본인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4장 내국신용장발행에 대한 특약

#### 제19조 지급금액

본인은 은행의 내국신용장 발행에 따라 은행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발행 당시의 내국신용장 원화금액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부기 외화금액에 매입(추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추심)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청구한 금액
2. 순수외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금액
3. 순수원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원화금액

#### 제20조 구매물품의 처분

구매물품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합니다.

#### 제21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은행은 본인이 관계당사자(발행은행,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22조 결제일

내국신용장의 결제일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합니다.

## 제5장 내국신용장환어음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23조 매입대금상환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①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모든 환어음
  - ②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급거절 되는 경우의 그 환어음
2.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은행의 서면 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를 지고 갚기로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일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은 매도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제24조 환어음 등의 반환

1.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
3.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